헌법집중 핵심암기장(제11판) 추록

P219 2. 내용 대체 (학설 내용 보강)

2. 주관적 범위(인적 범위)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되고 있으나, 이는 넓은 의미로서 공권력작용을 하는 모든 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입법권을 기속하는지가 문제되는데, ① 기속력조항의 구문과 법적 안정을 강조하는 '기속설', ② 헌법재판의 오류가능성을 강조하는 '비기속설', ③ 법적 견해의 근본적 변화에 기인하는 등 특별한 정당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속되지 않는다는 '상대적 기속설' [1] 등이 대립한다. 헌법재판소는 안마사자격 비맹제외기준 사건에서 "헌법재판권과 입법권의 범위·한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헌재 2008.10.30. 2006헌마1098등)고 판시하여 명확하지 않다. 생각건대 법적 안정성과 입법부의 대표권한을 동시에 고려하는 상대적 기속설이 타당하다.

---

1) 사회현상의 변화는 법인식의 변화를 초래하는바, 국민대표기관인 입법부는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고, 입법자가 동일규범을 반복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만 헌법재판소도 자신의 결정을 수정할 기회를 가지기 때문이다.